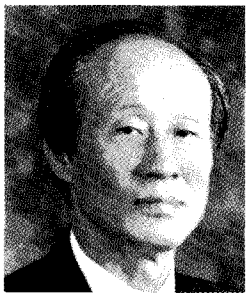

박 은 규
(사)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 확산과 문제점

The Crude Woodpacking Material

1998년 12월 미국 농무성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운송용 목재포장재(목재파렛트, 포장재 등)에 대하여 자국의 산림보호를 이유로 목재 포장재에 대한 가공처리 증명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FAO/IPPC(국제식물보호기구) 사무국은 지난 6월 6일~9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FAO/IPPC 주관 목재포장재 작업단 회의에서 채택된 '수출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관한 국제기준 안'을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가공 목재포장재라 함은 합판, 파티글보드, 베니어, Wood Wool 등과 같이 접착제, 열, 압착 또는 이들을 혼합 사용한 목재 산물을 제외한 목재포장재로써 파렛트, 포장재, 받침목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에서 화물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목재포장재이며 우리나라도 년간 400만매 이상의 목재파렛트가 수출화물의 1회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소량의 종이 파렛트, 플라스틱 파렛트, 철제용 컨테이너박스(회수반복사용)가 공급되고 있지만 목재소재가 주종을 이룬다. 이런 규제가 더욱 강화 · 확대된다면 이를 잘 모르는 수출업자는 수출화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보류, 반송, 지연, 가공, 검사처리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 수입국의 규제에 부응하기 위한 가공처리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파렛트 1매당 소득처리비는 1회 30매 기준시 1매당 1만원, 180매 처리시 약 2,5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6월말 현재 외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보면 호주 및 뉴질랜드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훈증증명서 요구, MB 48g/m³, 21℃이상, 24hrs, 상압 또는 64g/m³, 4hrs, 진공, Sulphuryl floride : 80g/m³, 24hrs, 상압, Phospine : 1.41g/m³, 72hrs, 상압 등이다.

미국은 중국(홍콩포함)산 목재포장에 대한 MB 훈증요구를, 중국은 미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목재포장재가 없는 화물 : 선적서류(B/L 또는 송장)에 "This shipment contains no solid packing material"을 기재, 침엽수이외의 목재포장재가 있는 화물 : 선적서류에 "The solid packing material in this shipment is not coniferous wood"을 기재, 침엽수 목재포장재 화물 : 건열처리후 미동식물검역소 증명을 요구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 일본 · 캐

나다 · 멕시코 · 중국 · 대만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증 첨부를 요구하고 미첨부시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 화주의 부담으로 MB훈증 또는 건열처리, 목재포장재의 반입이 금지된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를 포장한 일본 · 중국(홍콩 포함) · 대만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MB훈증사실을 식물위생증에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 일본 · 캐나다 · 멕시코 · 중국 · 대만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다음요건 중 1가지를 증명하는 식물위생증을 요구한다.

- 수피제거, 수분20%미만, 3mm이상 벌레구멍이 없음
- 건열처리(목재중심온도 56℃/30분)
- Kiln-drying후 수분함량 20%이하
- 훈증처리

자국의 환경보호와 포장폐기물 억제 및 간접적인 수입규제효과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규제의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AO/IPPC(국제 식물 보호협약 : 세계 111개국 가입) 차원에서 각 국가의 자의적인 규제방법에서 국제적인 기준안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초안이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무역국으로서 일본과 같이 미가공 목재포장재의 국내 수입에 있어서 아직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기준이 제정되어 우리도 이를 시행한다면 수입업자 측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규제를 하더라도 국제기준은 회원국들이 가능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며 처리비용 측면과 정보의 공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책으로는 국내 검역여건 개선-현재 사용중인 메틸부로마이드 소독처리는 간편하나 고비용임으로 국내 목재류 훈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열처리 훈증시설을 보완, 저렴하고 편리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목재회사들이 갖고 있는 열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우선은 열처리후 식물검역소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NPPO(국가식물보호기관)는 목재포장재에 관한 국제기준 동향을 항시 파악하고 참여하여 우리나라 해당업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현재대로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규제하면 우리의 무역상대국들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NPPO(국가식물보호기관)는 세계각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에 대한 정보를 해당업계에 신속히 전달하여 수입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한다.

지면관계로 개략적인 규제 현황과 전망을 서술하였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관련 업계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이고 따라서 직 · 간접적으로 수출입에 관련된 업계는 물론 목재 파렛트 생산업계, 목재 수출포장업계 등 모두 각별한 관심과 대응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ko